수원여자대학교 윤리강령

2013.7.1. 제정

수원여자대학교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교육이념인 ‘성실’, ‘박애’, ‘봉사’ 정신과 가치에 입각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월성 있는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적·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책무 수행에 필요한 대학과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 강령을 제정·선포하고 실천한다.

1. 대학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 박애 봉사 정신으로 상생의 창조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2. 대학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윤리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의무를 수호하고 전파한다.
3.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본 대학의 설립목적과 이념,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4.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대학의 교육이념인 ‘성실’, ‘박애’, ‘봉사’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교육활동에 창의와 성실로써 이 정신을 실천하고 전파한다.
5. 교직원은 대학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자아실현과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6.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직무수행 및 학습활동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대학문화와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
7.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성별·종교·국적·사상 및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교직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거나 활용, 또는 조작, 파기함으로써 개인이나 대학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보호, 관리, 활용하여야 한다.
9.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10.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학 또는 대학 구성원들의 정당한 이익이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2013.7.1.